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의 신설 등〉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55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의 신설 등	2
2. 정기검사 업무의 위탁 및 계량검사공무원 교육훈련 근거 신설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6. 1. 19.
3. 회부연월일 : 2026.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와 함께 현행과 같은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계량 공무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 등 신설).

Ⅲ. 검토의견

1.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의 신설 등

개정안은 형식승인·검정·재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면제하거나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 제24조 및 제3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 형식승인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그 밖에 형식승인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해당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	제23조(검정) ① ----- ----- -----

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 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제24조(재검정)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신 설>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

2. 그 밖에 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재검정) ① -----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정을 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재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 제2항,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 계량기의 교정절차, 교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7.·8. (생략)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24조제3항----- ----- 7.·8.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정계량기에 대하여 형식승인, 검정 및 재검정 제도를 두어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형식승인¹⁾은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계량기의 설계 및 구조 등이 법에서 정한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형식승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써, 계량기의 설계 단계에서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 선박·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정²⁾은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검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계량기의 성능·오차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는 제도로써, 개별 제품 단위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재검정³⁾은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검정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써,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임.

이와 같이 형식승인과 검정은 계량기의 제조·출하 단계에서 해당 계량기의 법정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량기를 출하하거나 유통할 수 없게 되는 구조이며, 재검정은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구조임.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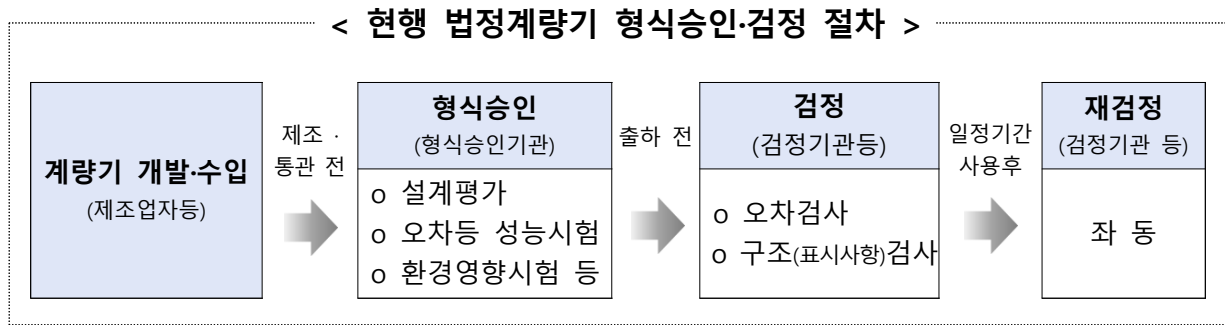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재검정)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산업통상부

이러한 현행 체계는 계량기의 설계 단계, 출고 단계 및 사용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적합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계량기에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이나 사용 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신기술 기반 계량기⁴⁾나 구조상 설치 현장에서 완성되는 계량기⁵⁾ 등은 형식승인 기준이 성숙되지 아니하였거나 완제품 상태에서의 시험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기술 사양의 변경이 빈번하거나 소량·맞춤형으로 제작되는 계량기의 경우에도 일률적인 형식승인 및 검정 절차의 적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4) 수소차 충전기의 경우 「수소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정량이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량법에 따라 사용공차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계량기로 지정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기술기준, 평가 기반이 부재하여 형식승인 등 제도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5) 계량증명업소용 대형저울은 사용 현장의 구조물로써 설치 전 완제품 상태의 형식승인 시험이 불가하나,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고시를 통해 형식승인을 면제하고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계량기의 종류나 사용 환경에 따라서는 재검정을 통한 적합 여부 판정보다 교정⁶⁾을 통한 오차 관리 방식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형식승인·검정·재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면제 하거나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의 적용 방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률적인 관리 체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상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신기술 기반 계량기나 구조상 형식승인 절차의 적용이 곤란한 계량기 등에 대하여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6) 「계량에 관한 법률」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측정기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 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기대되며, 이와 같은 사유로 산업통상부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7).

다만, 개정안은 형식승인·검정·재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판단 기준이나 범위가 비교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임 범위의 구체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특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사용환경, 국제기준의 존재 여부 등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인지 법률상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대상의 범위에 따라 제도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음.

7) 산업통상부는 계량기의 특성에 따라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적용 방식을 차등화하는 방향의 “계량기 적합성평가 체계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현행 단일체계를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계량기 특성에 따라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또는 교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계량기 적합성평가 체계 개편(안) >

구 분	유형구분	출고·통관 전 적합성평가			사용 중 적합성평가	적용 품목(안)
현 행	단일체계	형식승인	▶	검정	▶ 재검정 / 정기검사	현행 13종 계량기
개 편 (안)	유형①	형식승인	▶	검정	▶ 재검정 / 정기검사	주유기, 가스미터 등 11종
	유형②	형식승인				눈새김 탱크
	유형③	형식승인	▶	검정		분동
	유형④			검정	▶ 재검정	수소차 충전기
	유형⑤			검정	▶ 재검정 / 교정	예시) 의료용체중계, 의료용체온계, 주차용시간측정기 등
	유형⑥			검정		예시) 자, 맥주컵

자료: 산업통상부

따라서 법률 차원에서 일정한 판단 요소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예측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정기검사 업무의 위탁 및 계량검사공무원 교육훈련 근거 신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정기검사)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0조(정기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u>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생략) <u><신설></u>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u>

먼저, 현행법 제30조⁸⁾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재검정 대상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⁹⁾를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기검사¹⁰⁾는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상거래용 계량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정기검사는 현장에서 다수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업무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량검사 인력 부족이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①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 대상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기검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9)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정기검사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1. 판수동(板手動)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

10) 정기검사 관련 절차

- 정기검사 실시 전 1개월 전 검사 일시·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 → 정기검사 3일 전까지 관할 구역 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현황 조사 → 정기검사 실시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¹⁾.

또한,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검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¹²⁾ 운영 실태에 부합하도록 정기검사 수행체계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음으로, 현행법 제64조¹³⁾는 계량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계량검사공무원 인사관리 제도는 계량검사 업무가 계량기의 정확성 및 상거래 질서와 직접 관련되는 전문적인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11)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설문조사 결과 ① 지자체에 배치된 계량검사공무원 수에 대한 응답으로 '1명'이 전체의 92.6%, ② 계량업무 수행 경력에 대한 응답으로 '1년 미만'이 77%, ③ 계량공무원이 느끼는 계량업무의 난이도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어려움'(13.7%)과 '어려움'(46.3%)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12)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설문조사 결과 226개 지자체 중 50개(22%) 지자체가 정기검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176개(78%)의 지자체는 외부인력 또는 외주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3) 「계량에 관한 법률」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시·도지사는 계량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계량검사 역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이와 더불어 계량검사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량검사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산업통상부는 현재 계량검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e-learning)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집합교육의 경우 저울·분동·주유기 등 계량기 검사 실습을 중심으로 한 직무전문교육과 권역별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나라배움터를 통하여 계량검사공무원 직무교육, 불법·불량계량기 단속 및 조사요령 등 계량업무 관련 과정을 상시 운영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 근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량 행정 환경 변화 및 검사기술의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과 제도적 근거의 명확화를 위하여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

여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전문성 여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기검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기검사 업무의 위탁 운영 실태를 법률상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계량검사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및 계량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통상부도 이와 같은 취지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57